

미 저작권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보고서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채택되어 98년 1월 이후 각국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역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에서도 1996년 데이터베이스 조약안을 준비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기타 다른 나라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같은 해 유럽 지침서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역시 강력한 반대 의견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 상원 의원인 Hatch가 데이터베이스 보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작권청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 추가 보호법안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보고서 마련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언급되었던 DB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DB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DB산업 육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 중 핵심이 되는 내용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1. 저작권청의 공청회 개최

데이터베이스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고

의회에게 완전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를 계획했다. 1997년 3월부터 6월까지 저작권청은 도서관, 과학협회, 교육기관의 대표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들과 16회의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시작한다. (1)데이터베이스는 복제가 용이하므로 계속적인 창작(제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2)개별적인 정보는 개인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3)비록 그 정보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어느누구라도 원출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공공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과학, 조사, 교육, 뉴스보도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6)상업적, 경쟁적인 목적으로 실질적인 복제의 형태로 무임승차하는 행위(무료 또는 큰 비용의 투자없이 경쟁자의 DB를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몇몇 참가자들은 새로운 법제정에 대해 각각 지지와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대

다수의 베이터베이스제작자들이 입법화를 지지한 반면, 교육기관, 전화회사, 인터넷 관련 사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서관, 과학협회에서는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유사한 단체라 할지라도 모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청회의 많은 참석자들이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나타냈다.

새로운 입법에 찬성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한다. (1)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경제와 과학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유지에는 많은 자금과 시간의 투자가 요청된다 (3)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배포에 드는 비용이 점점 줄고 있다 (4)기존의 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데 부적절하다 (5)적절한 법적 보호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감소될 것이다 (6)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입법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입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한다. (1)찬성론자들은 현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현재 이용가능한 법적, 계약적, 기술적인 보호는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3)미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기존의 법적 체제내에서 발전하고 있다 (4)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비싸지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5)저작권법은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킨다.

몇몇 과학협회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보호형태가 현재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보의 전문 공개와 개방적 접근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2 논의 내용

저작권청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대략 6가지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1)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2)필요하다면 어떤 보호형태가 채택되어야하는가 - 새로운 재산권

의 형태여야 하는지 부정경쟁에 근접한 불법행위여야 하는지 (3)데이터베이스, 실질적인 투자, 실질적 또는 비실질적인 부분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4)공공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보호법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 (5)보호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6)단일출처 데이터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이다.

A. 보호의 필요성

새로운 형태의 법적인 보호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들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만족하기 위해 요청되는 입증의 형태 및 정도에 대한 의견은 크게 다르다. 단순히 장래 불이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넓은 범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실질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공청회 대부분의 토론은 저작권법, 계약법, 주법상의 부정이용원칙, 영업비밀, 상표법, 기술적인 보호조치와 같은 기존의 보호책이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에 의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파이스트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제한되어 왔다. 여러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실질적이고 경쟁적인 복제 행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다.

▲영업비밀은 이미 공중에게 이용되고 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폭넓게 적용될 수 없다.

▲상표법은 단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만을 보호하며, 상표를 포함한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출처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혼동케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계약법은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계약의

파기에 대한 구제조치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계약법은 관할권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계약에 의한 이행의 범위가 잘 해결되지 않고 논쟁을 낳는다.

▲부정이용은 확립된 원칙이 아니고 주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최근의 판례법에서 나타나듯이 그 원칙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결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조치는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에 있어 유용한 보완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전히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기술적 회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단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재이용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반대론자들은 현행 저작권법이 다른 기존의 보호 형태(계약법, 부정이용, 영업비밀, 기술적 조치 등)에 의해 보충되기 때문에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믿는다.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없으며, 법원에 의해서 제공된 보호의 범위는 정보의 공공 이익을 위한 접근과 관련해서 적절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계약법에 의한 보호 역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며, 계약 조건의 이행에 관계된 법이 다른 각도에서 발전된다면 의회는 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부정이용 원칙을, 유익하고 공익적인 이용은 허용하는 반면, 상업적으로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대상으로 삼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한다.

또한 법원이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그 원칙을 해석해왔으므로 의회가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호 수단은 상당히 효과적일 뿐 아니라, 법적 보호수단보다도 훨씬 쉽고 경제적이며,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또 한가지 이유로는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EU데이터베이스 지침서를 지적한다. 지침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1998년이 되었을 때, 미국내에 유럽과 유사한 특별법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없다면 미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 그들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에서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 제작자들은 외국의 경쟁자들보다도 훨씬 더 제한적인 계약을 채택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관할권 하에서는 온전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미국내 직업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고 미국 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유럽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특히 접근 방식이 유럽국가와 역사적으로 달랐던 공공기관 정보 사용 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지적재산권 정책을 확립함에 있어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과학적인 정보에 대한 점차적인 예산 억제 및 상업화가 증가하는 이러한 시점에, 정보 접근 통제를 허용한다는 잘못된 암시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들은 데이터베이스 지침서의 이행이 미국 제작자들로 허여금 유럽에서 현재 보다도 더 나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경쟁적인 불이익에 대한 예상이 옳은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침서에서 내국민대우를 채택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B. 새로운 보호의 형태

만일 의회가 추가적인 보호법을 채택할 경우 다음 두가지 모델 중에 한가지를 채택할 것 같다고 한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에 배타적인 특별권(sui generis)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서와 WIPO 데이터베이스 조약안이 따르고 있는 방법으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주장하는 자들에 지지하고 있다.

이 특별권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투자를 한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부분이 추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배타적인 권리 부여하는 것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듣다.

- i)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ii) 제작자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규적으로 개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무기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 iii) 공공의 정보가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
- iv)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추출,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추출, 이용인지 결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것에 회의론자들이 지지하는 방안으로는 부정경쟁법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v. Motorola Inc.' 판결에서의 논리와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저작권법이 주법에 우선할 지라도, 원저작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민감한 자료들을 추출해가는 직접적인 경쟁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모델에 찬성하는 자들은

이 모델은 배타적인 특별권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그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반면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용은 허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만일 연방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각 주의 다양한 부정이용법에 의존해야 하므로 연관성이 없을 수 있고, 핫 뉴스가 아닌 기존의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히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저작자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자에 의한 허락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불충분함이 내재한다'고 한다.

C. 정의

공청회 중 WIPO 조약안과 작년의 입법안에서 사용된 정의 특히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인 투자, 실질적인 혹은 비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는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물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너무 넓지 않게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주체물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된 제품의 유형 중에는 과학 논문집, 컴퓨터프로그램,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명세서, 비디오테이프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는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물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너무 넓지 않게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주체물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된 제품의 유형 중에는 과학 논문집, 컴퓨터프로그램,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명세서, 비디오테이프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가 있다.

많은 이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몇몇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교육기관들은 정부기관의 정보들이 보호 받는 주체물의 정의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정의는 보호의 기준의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종류의 투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요구되어야 하는가? 많은 참석자들은 권리의 얻기 위해선 중요한 추가적인 가

치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인 혹은 그 반대인 비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는 보호의 범위의 문제를 일으킨다. 보호로부터 비실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일차적인 소비자나 또는 특정 항목을 추출해야 하는 조사 목적의 사용이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에서 이 용어의 모호성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 비실질적인 부분의 축적에 대해 보호가 제공된다면 뉴스 수집, 교육 활동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몇몇 참석자들은 배타적인 특별권 모델보다 불공정 경쟁 모델이 채택되면 정의 문제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D.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한 이용

많은 참석자들은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것과 관련된 몇몇 자료 이용행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용

하는 권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유라든가 새로운 비용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행위에는 과학, 조사, 교육적인 목적의 사용들과 뉴스 보도 등이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가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선택된 보호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즉 부정경쟁에 근거한 보호법은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배타적인 특별권 모델이 채택된다면, 인정된 권리의 범위는 그러한 행위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적절한 제한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비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의 배제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때때로 과학자나 기자들은 그 콘텐츠를 분석하고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데이터의 실질적인 부분 혹은 전부를 추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의회가 결정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이 허용되어야만 할 그러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명확한 예외조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공정사용과 유사한 폭넓고 일반적인 예외조항을 통해서 혹은 저작권법 108~12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의 예외조항과 같은 훨씬 더 상세하고 분명한 예외조항을 통해서, 혹은 두 방식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몇몇 일부 참석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이용 허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유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허락은 지적재산권법과 친숙하지 않다.

그러나 의회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허락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왔다. 즉 의회가 협력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나 혹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서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과연 시장이 비영리적인 과학, 교육 사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많은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들은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쓴다. 새로운 보호의 형태를 실행하는 것이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킬지, 가격을 올리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E. 기간

이론상 보호는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허락함으로써 적절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에 적합할 만큼 지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모든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많은 가능성이 제안되었는데 최대 25년에서부터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진 어느 정도의 변화가 - 예를 들면 콘텐츠의 개신이나 확장하는 과정 - 새로운 보호 기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입법화에 대한 찬성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혼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데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개신되는 한 그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간이 부여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무기한적인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무기한적 보호를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입법시 개신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보호기간이 적용될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개신된 부분만 새로운 보호기간을 부여받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원래의 보호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온라인상에서만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으로 개신됨에 따라 원래의 형태로는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측면이 새롭고 어떠한 면이 구 버전에서 발견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

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배타적인 특별권 모델보다도 오히려 기한 산정에 상관없이 불공정한 이용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부정 경쟁 모델이 채택되면 해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되고 있다.

F. 단일출처 데이터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온 우려의 대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확실한 점은 어떠한 모델의 보호가 채택되는가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데이터를 직접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다른 출처로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해답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그 데이터가 그 밖의 장소에서는 얻어질 수 없을 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을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그 자체를 독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단일출처 데이터의 두 가지 주요 경우를 들자면 (1)배타적인 방법으로 개인 제작자에게 제공되는 정부기관 자료 (2)전화가입자 정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자신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 등이다.

만일 제작자가 그러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단일출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크게 구분하면 i) 보호에 대한 제한 조치 ii) 강제허락 iii) 독점 금지나 산업 특유의 정부 감독과 같은 다른 법을 통한 규제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조합도 고려될 수 있다.

보호에 대한 완전한 제한 조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접근방법이며, 이는 그러한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인 동시에, 데이터의 이용 가능을 확신하게 할 적절하고, 덜 극단적인 대안책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한조치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적은 경우는 정부 기관의 자료에 대해서 배타적인 조건으로 일부 테

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만 사용가능토록 한 경우일 것이다. 비록 그러한 협의를 하는 것이 미국의 연방 기관에게는 불법일지라도, 이법에 의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만일 일개 기관이 그 외 어느 곳에서도 구해지지 않는 데이터에의 접근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면 정부기관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정책이 침해될 수 있다.

법정이용허락에 의한 접근은 중립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여진다. 즉 제작자로부터 그들 제품의 사용에 대한 재정적인 이익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용의 성질 혹은 가격을 통제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이용허락은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채택된다.

세 번째 가능성은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통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정 경쟁법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던가 또는 전화통신업체의 연방 통신 위원회나 혹은 증권 시장의 연방 증권관리 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사업의 규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비록 단일출처 자료는 아니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때 특정 데이터에 대해 유일한 출처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상당한 돈과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협소한 틈새 시장(niche market)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다른 생산자도 기존의 선점자와 경쟁할 자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기존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지, 혹은 호전시킬지는 불확실하다. 일출처 문제 역시 새로운 보호의 형태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다. ◇